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 지역사회복지발전의 증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범위 조정(안 제4조제2항)

- 종전의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었던 부구청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에서 제외함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7. 5. 3 ~ 2007. 5. 2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6. 7)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청장,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을 “구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u>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이하 "구" 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제3조(기능) ① (생략)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및 2. (생략) 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u>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③ 및 ④ (생략)</p>	<p>제명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사회복지사업법</u>」 ----- -----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p> <p>제2조(설치) ----- -----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및 2. (현행과 같음) 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③ 및 ④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u>사회복지사업법</u> 제7조의2제2항 및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0조 제4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u>구청장,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의원 2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u>이 된다.</p> <p>③ 및 ④ (생략)</p> <p>⑤실무협의체 위원은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제1조의4제2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⑥ 및 ⑦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사회복지사업법</u>」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구청장, 주민생활국장,</u>----- ----- -----</p> <p>③~⑦ (현행과 같음)</p> <p>⑤-----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⑥ 및 ⑦ (현행과 같음)</p>